

# 심사보고서

2021. 7. 13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422
----------	-----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7. 2. 강남구청장(총무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7. 13.)  
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양미영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및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강남구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
  - 제24조(특별휴가)제3항 및 제9항 <삭제>
  - 별표5(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) <삭제>
- 특별휴가 확대
  -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 : 5일→10일(안 제24조제12항)
  -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 : 20일→30일(안 제24조제13항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규정 조항 변경
  - 육아시간 규정 조항 변경(안제24조제16항)(영 제7조의제7항→영 제7조의제8항)
- 일부 조항 정비
  - 삭제된 조항에 기존 조항을 이동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 -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 - 2) 입법예고(2021.6.4. ~ 2021.6.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외대상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2020.10.20. 개정되어 장시간 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,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기재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.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(위임규정)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상위 법령이

기 때문에 조례보다 우선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기재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법령 개정 시 해석상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‘체계정당성의 원리’ 에도 맞지 않아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‘특별휴가’ 는 법령에 정한 사항<sup>1)</sup> 이외 규정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

- 안 제24조(특별휴가)제3항 및 제9항은 복무규정 제7조의<sup>72)</sup>제11항, 제12항 및 제13항이 신설되어 중복기재 조문을 삭제하는 것임. 제12항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현재 5일⇒10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및 마포구, 양천구, 관악구가 동일하게 개정된 사례가 있음. 제13항에서는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현재 20일⇒30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성북구, 송파구, 강동구에서 확대 시행 중에 있음. 제16항은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이 제8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.

- 안 별표 5의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복무규정 제7조의 3<sup>3)</sup> 다음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---

1)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)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[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)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3)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3(연가 당겨쓰기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(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)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